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모집 공고(일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상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 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사업지역, 대상주택, 지원한도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대상주택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직거래 불가)

종 류	면 적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 구비 필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및 5인이상 가구 : 예외 적용

- ※ 건축법 위반 주택은 입주 불가(건축물대장 사전 확인 가능)
- 지원한도 : 호당 13,000만원(주택도시기금 지원)
 -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32,500만원 이내로 제한됨.

3.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정의를 따름.)

대상	유형	자격요건
신청자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포함)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한부모가족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

확 인 사 항

무주택세대
구 성 원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분을 말합니다.
 - ① 주택공급신청자
 -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및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은 주택공급신청자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보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관련]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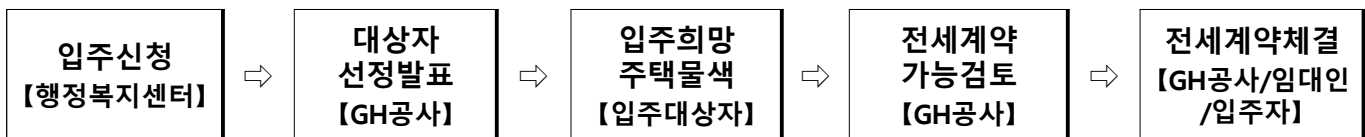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4.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6. 8. 4.(화) ~ 신청접수 종료 공고시까지
 - ※ 연간 공급목표 대비 신청접수가 과다할 경우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금 예산 소진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5.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비 고
신청서류	① 신청서	공급신청서(접수장소 비치)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함
	③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④ 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⑤ 자격확인서류	-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26. 7. 31.) 이후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6. 입주대상자 발표

- 일자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자격조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방법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7.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1) 임대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이며, 임차료 지급보증 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계약 가능

2)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순위는 횡수 제한없이, 2순위는 14회 재계약 가능.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기존 자격요건,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횡수를 제한하지 않음

3)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13,000만원	
부담 기준	공사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95%	12,350만원
	입주자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65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며, 최대 32,500만원 주택까지만 계약 가능

4) 임대료 :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부담

지원금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금리	연 1.2%	연 1.7%	연 2.2%

※ 생계·의료수급자 및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0.2%p~0.5%p) 적용, 수급자 및 자녀수 중복 적용 가능하나, 최저금리 연 1.2%

5) 임대조건 산정 예시

※ 입주자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입주자 부담

전세 (기본금리)	임대보증금 1억3,0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입주자보증금 : 65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연 2.2% ÷ 12] = [(1억3,000만원 - 650만원) × 2.2% ÷ 12] = 226,410원
전세 (우대금리)	생계·의료수급자(0.2%p)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0.2%p)이고 임대보증금 1억3,0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입주자보증금 : 65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연 1.8% ÷ 12] = [(1억3,000만원 - 650만원) × 1.8% ÷ 12] = 185,250원
보증부월세	임대보증금 1억3,000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지급보증시) ◦ 입주자보증금 : 680만원(기본 650만원+3개월분 월세 30만원) ※월세한도액: 6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2.2% ÷ 12] = [(1억3,000만원 - 680만원) × 2.2% ÷ 12] = 225,860원

8. 입주자격 확인

□ 입주대상자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 예정

- 1) 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생계·의료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고령자(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구 해당 여부(각 자격별 소득기준 초과 여부)
- 2) 소득조회 항목 : [참고1]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참고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기타소득	⑫공적이전소득

9. 기타사항

- 타시행자(LH 등)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공사 또는 타시행자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청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신청자격, 소득 및 세대구성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7년 1월 31일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소유자와 공사간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공사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입주자 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10년마다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60만원 한도, 초과비용은 입주자 부담)합니다.
- **공사에서는 주택의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므로** 입주자는 계약 전에 주택을 잘 확인한 후 결정하셔야 하며, **수리 관련 사항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 **권리심사 전에 가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 국토교통부 및 공사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GH전세임대 전용 콜센터 : ☎ 1588-8056
- 매물정보는 KB부동산 플랫폼 내 “GH전세임대 전용관”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접속주소 : kbland.kr/gh > ※ 이용을 위해서는 로그인 필요(회원가입 필요)

2026. 7. 31.



참고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2순위)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3순위)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4순위)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5순위)국세청 종합소득금액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 가 지만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 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 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참고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의2호]

-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제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문서발송을 대행하는 업체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전산자료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문서발송 대행업체	발송 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계약내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